

##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

I. 제출자 : 이천시장

II. 제출일자 : 2002. 10. 14.

### III. 근거법령 :

-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, 제10조, 제17조, 제20조
-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, 제9조, 제33조, 제34조, 제40조, 제41조, 제42조, 제43조, 제46조, 제47조
- 국가기술자격 기본법 17조

### IV. 검토내용

#### 1. 제안이유

- 2001. 11. 22일자(영제17412호)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
-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함.

#### 2. 주요골자

-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구성·운영을 통하여 일부 광고물 허가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거치도록 함(안 제3조 내지 제5조)
-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 자격 및 절차와 이에 따른 검사 절차를 따로 정하고 현수막 지정 계시대 위탁사항에 대하여도 정하도록 함(안 제6조 내지 제9조)
-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(안 제10조)

(제57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)

- 옥외 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와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(안 제12조 내지 제13조)
- 옥외광고물 등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, 안전도검사 수수료, 옥외광고업신고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(안 제14조)
-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에 대하여 정하도록 함(안 제15조 내지 제16조)

### 3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,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키 위해
- 2001. 11. 22일자(영제17412호)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제안한 조례안으로써
- 안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였고
- 안 제2조는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을 기록· 관리토록 정하였으며
- 안 제3조 내지 안 제5조는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 범위와 자격요건, 소위원회구성 및 운영방법과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, 전문가, 이해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 청취 후 위원회의 의결 관계를 규정하였고
- 안 제6조 내지 제8조는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자의 자격요건, 위탁절차, 검사절차를 규정하였으며
- 안 제9조 내지 제10조는 현수막 지정 계시대의 위탁과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와 그 비용을 징수토록 규정하였고
- 안 제11조는 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재교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

- 안 제12조 내지 제13조는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계획수립, 교육의 종류, 교육대상자, 교육방법, 교육비용과 교육위탁자의 임무, 자격요건, 위탁기간 등을 규정하였고
- 안 제14조는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수수료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을 규정하였으며
- 안 제15조 내지 제16조는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와 이행 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를 규정하고자 제안한 조례안으로써 검토결과, 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